

의안
번호

368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1.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368호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5.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세징수법」 제9조의 결손처분 용어가 정리보류로 변경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관련 조문 조항의 용어를 상위법에 일치시키려 함.

3. 주요내용

- 결손자료→정리보류 자료(안 제2조제5항제2호나목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징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4. 09. 19. ~ 2024. 10. 10.

○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세징수법」 개정에 따라 ‘결손처분’을 ‘정리보류’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성 있게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항제2호나목을 개정된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6조에 따라 ‘결손처분’을 ‘정리보류’라는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, 「지방세징수법」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, 성격이 다른 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, 그 외의 사유(채납처분 종결 등, 채납처분 중지, 채납자 행방불명 등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‘정리보류’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임.

〈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6조 개정 전·후 비교〉

개 정 전	개 정 안
제106조(결손처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. 1. 채납처분이 종결되고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보다 적을 때 2. 채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.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. 채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06조(정리보류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. 28.> 1. 채납처분이 종결되고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보다 적을 때 2. 채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. 삭제 <2022. 1. 28.> 4. 채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 1. 28.>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납처분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. 28.> [제목개정 2022. 1. 28.]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「지방세징수법」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바람직하다 사료 됨.